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601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천안시 거주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8.29.(금)	2025.09.08.(월)	2025.09.09.(화)	2025.09.10.(수)	2025.09.16.(화)	2025.09.18.(목)~ 2025.09.25.(목)	2025.09.27.(토)~ 2025.09.30.(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cheonan-iparkcity2.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8.29.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2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9.08.(월)	2025.09.09.(화)	2025.09.10.(수)	2025.09.16.(화)	2025.09.18.(목)~ 2025.09.25.(목)	2025.09.27.(토)~ 2025.09.30.(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충청남도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 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임으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 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 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는 분양 상담전화(☎1551-6013) 및 공식 홈페이지(<https://cheonan-iparkcity2.com>)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 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자,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 32274호(2025. 08. 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9-1 외 46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34층 11개동 총 1,222세대 중 임대분양 245세대 제외 일반분양 977세대

[특별공급 361세대(기관추천 56세대, 다자녀가구 97세대, 신혼부부 129세대, 노부모부양 29세대, 생애최초 5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366	01	084.9800A	84A	84.9800	28.1400	113.1200	54.6500	167.7700	45.2351	343	34	34	79	10	30	187	156	16
	02	084.9700B	84B	84.9700	29.2700	114.2400	54.6500	168.8900	45.2298	220	22	22	50	7	20	121	99	11
	03	102.8500	102	102.8500	33.2100	136.0600	66.1500	202.2100	54.7474	350	-	35	-	10	-	45	305	12
	04	118.0900	118	118.0900	37.4700	155.5600	75.9700	231.5300	62.8597	64	-	6	-	2	-	8	56	2
	합 계									977	56	97	129	29	50	361	616	41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분양가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6.01.20	26.06.19	26.11.20	27.05.20	27.09.20	28.01.20	입주 시
84A	202동~205동 3,4호	2층	16	177,588,820	347,511,180	-	525,100,000	5,000,000	47,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157,530,000
		3층	6	183,304,400	358,695,600	-	542,000,000	5,000,000	49,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206동 1,2,4호	4층	11	189,019,980	369,880,020	-	558,900,000	5,000,000	50,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167,670,000
		5~9층	46	190,947,720	373,652,280	-	564,600,000	5,000,000	51,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169,380,000
	207동, 209동 1호	10~19층	96	191,894,680	375,505,320	-	567,400,000	5,000,000	51,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170,220,000
		20층 이상	168	192,841,640	377,358,360	-	570,200,000	5,000,000	52,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171,060,000
84B	201동~205동, 207동~211동 2호	2층	11	173,226,040	338,973,960	-	512,200,000	5,000,000	46,220,000	51,220,000	51,220,000	51,220,000	51,220,000	51,220,000	51,220,000	153,660,000
		3층	8	178,840,160	349,959,840	-	528,800,000	5,000,000	47,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158,640,000
		4층	8	184,420,460	360,879,540	-	545,300,000	5,000,000	49,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163,590,000
		5~9층	32	186,280,560	364,519,440	-	550,800,000	5,000,000	50,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165,240,000
		10~19층	60	187,227,520	366,372,480	-	553,600,000	5,000,000	50,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166,080,000
	206동 3호	20층 이상	101	188,140,660	368,159,340	-	556,300,000	5,000,000	50,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166,890,000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분양가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26.01.20	26.06.19	26.11.20	27.05.20	27.09.20	28.01.20	입주 시
102	201동 1,3호	2층	12	200,078,880	388,655,564	38,865,556	627,600,000	5,000,000	57,76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188,280,000
	202동~205동, 210동 1호	3층	12	206,550,520	401,226,800	40,122,680	647,900,000	5,000,000	59,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194,370,000
		4층	12	212,990,280	413,736,109	41,373,611	668,100,000	5,000,000	61,810,000	66,810,000	66,810,000	66,810,000	66,810,000	66,810,000	66,810,000	200,430,000
	207동, 209동 3호	5~9층	60	215,158,120	417,947,164	41,794,716	674,900,000	5,000,000	62,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202,470,000
		10~19층	120	216,242,040	420,052,691	42,005,269	678,300,000	5,000,000	62,830,000	67,830,000	67,830,000	67,830,000	67,830,000	67,830,000	67,830,000	203,490,000
	211동 1,3,4호	20층 이상	134	217,294,080	422,096,291	42,209,629	681,600,000	5,000,000	63,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204,480,000
118	210동 3,4호	2층	2	234,158,600	454,855,818	45,485,582	734,500,000	5,000,000	68,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73,450,000	220,350,000
		3층	2	241,714,160	469,532,582	46,953,258	758,200,000	5,000,000	70,820,000	75,820,000	75,820,000	75,820,000	75,820,000	75,820,000	75,820,000	227,460,000
		4층	2	249,269,720	484,209,345	48,420,935	781,900,000	5,000,000	73,190,000	78,190,000	78,190,000	78,190,000	78,190,000	78,190,000	78,190,000	234,570,000
		5~9층	10	251,788,240	489,101,600	48,910,160	789,800,000	5,000,000	73,980,000	78,980,000	78,980,000	78,980,000	78,980,000	78,980,000	78,980,000	236,940,000
		10~19층	20	253,031,560	491,516,764	49,151,676	793,700,000	5,000,000	74,370,000	79,370,000	79,370,000	79,370,000	79,370,000	79,370,000	79,370,000	238,110,000
		20층 이상	28	254,306,760	493,993,855	49,399,385	797,700,000	5,000,000	74,770,000	79,770,000	79,770,000	79,770,000	79,770,000	79,770,000	79,770,000	239,310,000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9800A	084.9700B	102.8500	118.0900
약식표기	84A	84B	102	11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그 증감 비율이 허용오차범위 이내에서 변동될 경우 별도 상호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계획 변경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상호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둘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 (면적산출근거에 의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처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상호정산금액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102	118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2	-	-	6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	-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6	4	-	-	10
	장애인	충청남도	4	-	-	8
		대전광역시	2	-	-	4
		세종특별자치시	2	-	-	4
	중소기업 근로자		12	6	-	1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4	22	35	6	97
신혼부부 특별공급		79	50	-	-	12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	7	10	2	29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20	-	-	50
합 계		187	121	45	8	36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사업관계자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차 계약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 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6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구 분	추천기관	관련법규 및 기준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필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필요
	장애인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필요없음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7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비고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자녀기준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2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9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0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5">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5">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5">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 colspan="4">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 colspan="4">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thead><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 colspan="5">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thead><tbody><tr><td>2025.08.29.(금)</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 colspan="5">(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tbody></table>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thead><tr><th rowspan="2">소득구분</th><th rowspan="2">비율</th><th colspan="6">소득금액</th></tr><tr><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thead><tbody><tr><td>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td><td>130% 이하</td><td>~9,366,906원</td><td>~11,151,514원</td><td>~11,740,362원</td><td>~12,653,012원</td><td>~13,565,661원</td><td>~14,478,311원</td></tr><tr><td>신생아일반공급,</td><td>130% 초과</td><td>9,366,907원~</td><td>11,151,515원~</td><td>11,740,363원~</td><td>12,653,013원~</td><td>13,565,662원~</td><td>14,478,312원~</td></tr></tbody></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2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366,907원~	11,151,515원~	11,740,363원~	12,653,013원~	13,565,662원~	14,478,312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2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366,907원~	11,151,515원~	11,740,363원~	12,653,013원~	13,565,662원~	14,478,312원~																																														

일반공급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6">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6">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안내
---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9.16.(화) ~ 2025.09.25.(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9.1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 2025.09.18.(목) ~ 2025.09.25.(목) (7일간, 10:00 ~ 16:00 입장기준) • 특별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2순위: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당첨자 접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접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검수일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상기 일정과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음)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건본주택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해 거주기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사유로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 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 및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매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4(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 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건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당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비속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피부양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 인터넷발급 불가)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 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본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건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아래 [표1]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점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의 3개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필수 제출 - (발급기관) 건강보험공단 ※ 공단 직접방문 필수(온라인 발급시 3개년도 출력 불가)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 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④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세무서/등기소 ③ ④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소득신고 미도래로 인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②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소득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텍스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 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 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 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위택스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추가 해당자	•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부적격 당첨자 처리와 관련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 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일시: 2025.09.27.(토) ~ 2025.09.30.(화) 4일간 (10:00~16:00)	장소: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견본주택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 일반공급)	자격검증 미제출자	○		자격검증서류(사전서류미제출자)	-	상기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자격검증 사전서류 제출자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서명으로 가능하나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 / 단, 여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요)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필증)	본인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계약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 / 단, 여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요)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국문 원본서류를 제출하며(사본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 세법」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 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 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 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 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 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증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납부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매계약의 경우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또는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BNK 경남은행	207-0213-0601-0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 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계약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자격검증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등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청약 시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 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 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 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9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4,000,000	1,400,000	12,600,000	
84B	14,000,000	1,400,000	12,600,000	
102	17,000,000	1,700,000	15,300,000	
118	19,500,000	1,950,000	17,550,00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 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발코니의 위치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조,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및 단턱 형성,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는 일부 유상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비확장 시와 발코니 확장 시 기본 제공 품목 등(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과 견본주택 내 비치된 카탈로그, 마감재리스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마련된 POP 안내문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칠,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BNK 경남은행	207-0213-0610-0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정확한 계약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 내용은 아래의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분류	구분				판매가	제조사	비고
	제품명		선택사항	설치대수	설치위치		
일반형 실내기	84A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9,510,000	LG전자/삼성전자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2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21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1,90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0,23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400,000	
	84B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2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21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0,23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400,000	
	102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59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확장기본형/주방특화형)	8,33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30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98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확장기본형/주방특화형)	10,3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490,000	
	118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9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80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2,33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990,000	
고급형 실내기	84A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1,480,000	LG전자/삼성전자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9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32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4,05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2,06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600,000	
	84B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9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32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2,06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600,000	
	102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54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확장기본형/주방특화형)	10,0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40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4,11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확장기본형/주방특화형)	12,1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690,000		
	118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99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99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4,56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8,280,000		

◎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원, VAT 포함)

적용품목	구성 및 모델	판매가	제조사	비고
빌트인 냉장고	BRS685030SR	5,500,000	삼성전자	
	BRS665130SR	7,300,000		
	RR40C79(8)95AP+RZ34C79(8)65AP+RQ34C79(8)45AP	5,400,000		
	S715SI24B	6,300,000	LG전자	
	S695SI34B	7,650,000		
	BC1L2AA+BC1F2AA+BC1K3AA	5,1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RQ22K5(L/R)01EC	1,300,000	삼성전자	
	RSK221JVPL/R	1,300,000	LG전자	
식기세척기	DW80F71Y1SEW (12인용)	890,000	삼성전자	
	DUE5NSE (14인용)	1,190,000	LG전자	
전기쿡탑 (3구쿡탑)	NZ63DG403EFK (인덕션 3구)	680,000	삼성전자	
	NZ63B5056AK (인덕션 3구)	950,000		
	BEI3ASB4BI (블랙 인덕션 3구)	1,050,000	LG전자	
	BEI3ANHLLB (화이트 인덕션 3구)	1,200,000		
빌트인 오븐 UPGRADE	NQ50T8539BK	550,000	삼성전자	
	MZ385EBTA	250,000	LG전자	

◎ 인테리어

(단위: 원, VAT 포함)

유형	주택형	구성	판매가	제조사(공급사)	비고
주방특화	84A	주방특화형	7,020,000	HDC현대산업개발	
	84B	주방특화형	1,670,000		
	102	주방특화형	10,770,000		
	118 (전기쿡탑 선택 시 가능)	주방특화형	NZ63DG403EFK		
			NZ63B5056AK		
			BEI3ASB4BI		
			BEI3ANHLLB		

중문	84A	원슬라이딩	1,510,000	HDC현대산업개발	
	84B	원슬라이딩	1,510,000		
	102	원슬라이딩	1,510,000		
	118	원슬라이딩	1,51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84A	확장기본형	1,340,000	HDC현대산업개발	
		무상알파룸형	1,220,000		
		주방특화형	1,400,000		
	84B	확장기본형	1,140,000		
	102	확장기본형	1,390,000		
	118	확장기본형	1,320,000		
주방 세라믹타일 (벽+상판)	84A	확장기본형	9,340,000	HDC현대산업개발	
		무상알파룸형	9,230,000		
		주방특화형	11,930,000		
	84B	확장기본형	8,400,000		
		확장기본형	9,380,000		
	102	주방특화형	11,860,000		
		확장기본형	9,140,000		
	118	주방특화형	17,60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시트판넬)	84A	확장기본형	6,450,000	HDC현대산업개발	
	84B	확장기본형	10,020,000		
	102	확장기본형	7,330,000		
	118	확장기본형	10,140,000		
파우더특화	118	안방파우더 가구특화	9,640,000	HDC현대산업개발	
마루(국산)	84A	확장기본형	1,580,000	동화자연마루	
		무상알파룸형	1,590,000		
		주방특화형	1,570,000		
	84B	확장기본형	1,540,000		
		확장기본형	1,860,000		
	102	주방특화형	1,890,000		
		확장기본형	2,210,000		
	118	파우더특화형	2,210,000		
조명특화	84A	확장기본형	6,480,000	HDC랩스	
	102	확장기본형	9,380,000		
	118	확장기본형	10,050,000		
욕실특화	전타입	욕조 → 샤워부스 변경	1,140,000	HDC현대산업개발	
사각싱크볼+수전	전타입		900,000	Nobili Live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TCB-7000(공용욕실)	550,000	보보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선택(유상)품목의 계약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 선택품목공급계약을 체결·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공동주택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개사항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хин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118타입의 경우 가스배관 설치 불가로 전기쿡탑 선택 시 주방특화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방특화 시, 전타입에 독립형 후드(아일랜드형)가 설치됩니다.
- 상기 별도계약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동일 제품 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된 옵션품목은 옵션계약 전 공급계약자를 대상으로 내용 전달됩니다.
-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는 일부 유상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비확장 시와 발코니 확장 시 기본 제공 품목 등(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과 견본주택 내 비치된 카탈로그, 마감재리스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마련된 POP안내문을 통해 필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전기쿡탑 미선택 시, 가스 3구쿡탑이 제공되며, 오븐 업그레이드 미선택시, 기본형 오븐 제공됩니다.
- 유상옵션 주방엔지니어드스톤(백) 미선택시 타일(백)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자를 대상으로 향후 별도 계약일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옵션계약 전에 공급계약자를 대상으로 옵션선택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별도로 통지하는 계약체결 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11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유상)품목의 계약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경미한 설계변경 및 공부정리 등에 의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그 증감 비율이 허용오차범위 이내에서 변동될 경우 별도 정산을

-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단, 단위세대 벽체 공용면적은 단위세대에 배분)되었으며,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 또한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브랜드로그,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옥상구조물, 교통시설물, 조경 등의 계획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스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인·허가 협의 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인허가관청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원, 공공용지, 완충녹지, 기타 공공시설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허가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직접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공급안내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시공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공급안내,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시공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의 세부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녹색인증, 건물에너지 및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결로방지설계기준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로,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 적용될 수 있고, 적용 부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석종은 특성에 따라 시공 시 컬러가 일부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체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실 시공된 마감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체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상옵션 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옵션선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평면 및 마감재의 유상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기본형/선택형 평면 및 마감재를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118형은 주방 유상옵션형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기본형, 선택형 평면 및 마감재를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118형 주방 상판 및 벽, 거실에 설치 된 세라믹판넬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18형 안방과 파우더는 유상옵션형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기본형 평면 및 마감재를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18형 공용욕실에 설치된 샤워부스는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체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임의로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 기간 촬영 보존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새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조경용 조명 및 보안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수경시설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관리비 예치금) 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입면, 층고, 천장고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주체에 따른 입주민들이 자체적 유지, 관리운영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유무 및 설치 개소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내부 레이아웃, 외부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 또는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입면, 평면, 단면, 창호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사업지 인근 북측 공동주택, 교량 서측 공동주택, 학교, 동측 철도, 남측 학교, 저류시설 예정부지가 있거나, 기존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조망, 생활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완충녹지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 등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등으로 도로교통 소음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별도의 방음(벽)시설 설치는 없습니다.
- 본 사업대지 외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업지 지반 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폐기물처리시설,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 현황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 천안 부대1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은 학교설립(가칭 천안성성3초등학교)을 통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설립시기와 입주시기가 다를 경우 인근 초등학교로 임시 배치되고 이를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임시배치 기간 동안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 당 사업지에 따른 유입 중학생은 천안부성학구에 배치할 예정이나 추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고 교육정책 및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 등)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일부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

※ 위 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 어린이집 관련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기로 하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외 안테나
 1. 옥상층 : 201동, 203동, 205동, 206동, 207동, 209동, 211동
- 중계장치
 1. 옥상층 : 201동, 203동, 205동, 206동, 207동, 209동, 211동
 2. 지하1층 : 동통신실 4개소
- 지하주차장, 지하구조물은 관계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허가 단계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입구 부근 옥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구획(15대)이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전면에 위치하여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옥상난간의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외벽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장식물 및 옥탑구조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PC, DECK 또는 철골 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식재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위치 및 종류, 수량, 포장 패턴 및 재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인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인·허가 과정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조경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에 조경석쌓기 또는 옹벽이 형성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 또는 옹벽의 형태 및 재질, 높이 등은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시니어라운지,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펌프실, 전기실은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에 따라 대지경계 또는 녹지의 경계등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내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구조물에 의해서 일부 세대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10동)는 소음 및 매연, 조망권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수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및 진입을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및 차도와 지상 주차장에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상 일부 동의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펌프실,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천창, 생활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개소, 크기는 실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한 세대의 경우 운행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및 마감재 판넬 이음부위의 위치와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일 및 인조석, 천연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 줄눈 타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참조 바랍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마루 자재의 구성 부재 중 심재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 중에서 시공 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장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면대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 부분에 가구류(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가구, 거울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시 단위세대 우물천장의 높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별도의 배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 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장형 선택 시 인접 세대의 확장 유무에 따라 단열재 설치에 따른 이형 벽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 선택 시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로 나가는 문에는 일반 슬라이딩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 확장형 선택 시 거실, 침실 등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같이 일반 슬라이딩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기술적인 검토로 디자인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식기세척기,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서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 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 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 시 침실 분함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장 시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동빨래건조대 사용 시 다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튼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되어 주방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손끼임 방지 장치는 본공사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색상, 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보일러는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확장형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었으며, 확장기본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합니다.
- 주방가구 키크장은 가전 유상옵션에 따라,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합니다.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 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및 내부 형태,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및 차량의 동선 방향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비상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이며,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옹벽, 법면, 외부동선(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디자인, 위치, 범위, 색채, 구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석, 인조석 및 엔지니어드스톤과 타일류는 본 공사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 벽,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타일은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아트월 옵션선택시 적용되는 대형 세라믹판넬은 파손시 교체가 어렵거나, 건본주택과 패턴과 문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주방인터넷TV, 욕실스피커폰, 디지털도어락,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적용된,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설치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별 옵션 선택에 따른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기타 기구의 위치, 타입,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무인택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일부 동의 경우 택배 차량의 진입 층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조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또는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이동 통신 중계기, 태양광 발전 설비, 일조 시스템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의 배관 및 배선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PD계획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1층 필로티 통로 계획이 인허가 과정,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1층 필로티 및 동출입구 입면, 난간턱,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주, 주차램프 등의 구조물에 의해 1층을 포함한 저층부 세대는 시야간섭, 소음,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아파트의 경우 설비공간 확보를 위해 1층 상부에 PIT공간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계단의 형상 및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화조/빗물저류조 등 관리시설의 출입문, 점검사다리 설치로 인해 일부 주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급배기 환룸/제연환룸의 설치로 인해 일부 주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계획에 따라 일부 주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 설치계획이 인허가 과정 및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란 설계변경 시 개별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사전에 통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펌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환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고 이에따라 조경석, 옹벽 및 사면처리 등이 형성될 수 있으며, 형태 및 위치, 재질, 높이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배기캡이 설치됩니다. (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 입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은 11개소,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은 1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자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휴게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이용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공기안전매트 등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 설치가 권장될 경우 1층(저층) 전후면 해당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단지내 식재경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는 조정식재 및 조정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태양광설비의 위치는 실시공시 옥상구조물에 의한 간섭 및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 날개벽 길이,창호.도어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주변현황(도로, 공원, 가로수, 건물, 식재, 가로등 등)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모형에 반영된 아파트 1층 출입구는(지상 정상 주동출입구, 필로티 진입 출입구) 주변 조경, 보행도로 등 시공계획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또는 녹지의 경계 등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DA 위치, 광덕트(채광),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대의 위치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일조환경 개선을 위해 옥상층 측벽에 일조개선시스템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방법 및 제품은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옥탑부형태, 주동 형태, 저층 석재, 창호 형태, 측벽 디자인, 외부 색채,벽체 마감, 외부 로고, 단지 식재, 포장 계획, 조정시설물, 층고디테일, 방음벽 설치, 주차 게이트 형태, 특화 디자인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내용, 법규변경, 시공시 현장 여건,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선형/폭/포장재/패턴, 조경 및 식재계획, 외부시설물은 실시공시 동선, 기능, 미관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동출입구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 공간에 지하층 자연채광을 위한 광덕트 (환기겸용)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와 형태는 실시공시 변경되어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부 보행자 출입구(완충녹지 통과동선, 6m 보행자도로 연결동선 포함)의 위치와 형태는 초등학교의 실시설계 및 지형의 고저차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시설

- 주차대수 : 지하 1,871대, 지상 근생 15대 (전기차 충전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함)
- 아파트 주차대수에 전기차 충전공간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전기차 외의 자동차가 사용 가능한 주차대수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및 실 시공 등에 따라 주차대수, 전기차 충전설비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옥상구조물 및 옥상난간의 디자인, 색채, 구조, 형태, 위치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난간 구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구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색채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찰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정면,배면,측면, 코어에 대한 줄눈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선콘 포함), 근린생활시설은 실시공시 입면, 디자인, 창호 형태/크기, 줄눈, 시공 디테일,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석종은 특성에 따라 시공시 컬러가 일부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내용, 옥외 광고 심의에 따라 사인물 위치 및 디자인, 단지 명칭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 계단, 썬큰위치/디자인/출입방향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사이즈의 변경으로 코어 상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단위세대 외)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천장고는 천장 설비 배관 높이에 따라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PC 또는 DECK공법이 적용되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인근 및 필로티 내에는 헬륨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전기실 등은 본 공사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PC 또는 철골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단위세대)

1) 주방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개폐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배기캡이 설치됩니다.(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의 연결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가스기기(가스렌지 등)와 도시가스배관의 연결(별도 수수료 발생)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서비스지역 고객센터(관할 지자체 및 구청 문의)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스쿱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쿱탑 및 전기+가스쿱탑(하이브리드) 설치시 가스,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쿱탑 옵션선택시, 옵션가격은 기본제품 사양에서 미설치되는 품목에 대해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인터넷TV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인터넷TV는 WIFI 전용 모델로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인이 개별 구축하여야 합니다.

2) 에어컨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 (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시스템에어컨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옵션행사 시점에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3) 화장실

-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 및 소재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최하층 세대는 욕실 상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환기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교환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5) 발코니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되며, 사양 및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 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 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 린,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세탁기실 및 발코니)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및 주방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소방

-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 위치 및 대피로에는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기타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외 크기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장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대대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공기질 감지센서(무선AP일체형)는 발코니 확장 시 기본설치 품목입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관련 사항(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옵션행사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 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을 설치하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 사항

- IoT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사업자도 가능하며,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세대에 IoT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월패드 터치스크린 및 스마트폰용 홈네트워크 APP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IoT운영사의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단,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 스마트홈 IoT 가전제품 연동 제어 범위는 홈 IoT 서비스 제공사와 제휴된 가전 제품에 한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 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및 보수사항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8년 8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앞 당겨진 실입주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전기 및 수도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열쇠인수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계약자의 열쇠인수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 거주,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시니어라운지, 실외 주민운동시설 등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계획 변경에 따라 건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 지하1층 2.7m, 지하2층 2.7m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 : 2.7m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사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속동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스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보증약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① 공사가 보증약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② 공사가 보증약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 사 명	주식회사 대성씨엠건축사 사무소	주식회사 대경기술단	주식회사 동진	주식회사 동현기술사사무소
감리금액	4,140,895,000원	930,999,600원	1,317,346,000원	190,000,000원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씨더블유제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대구광역시 수성로 청수로9길 40-19(중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70111-0770215	110111-674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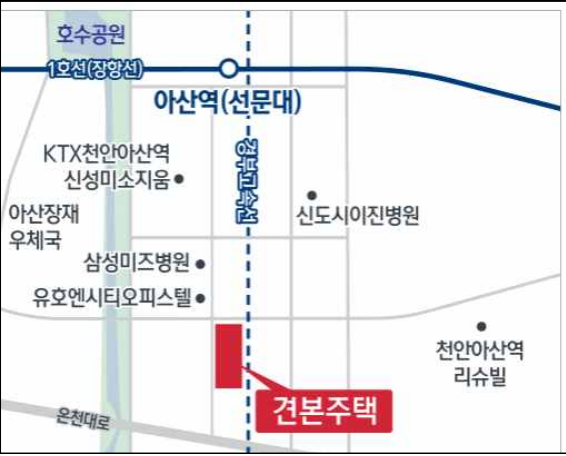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씨더블유제이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대출금융기관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시행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 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씨더블유제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씨더블유제이와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씨더블유제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씨더블유제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씨더블유제이와 시공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본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천안 아이파크시티 2단지 홈페이지(<https://cheonan-iparkcity2.com>)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유의사항	위치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자재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건본주택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 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9-1